

#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4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5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적용대상에 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” 를 신설함(안 제3조제3호 신설)

#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 및 그 소속 행정기관</p> <p>2. 시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과 그 자회사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~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2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 및 그 소속 행정기관</p> <p>2. 시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과 그 자회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</u></p> <p>제11조(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① <u>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<p><u>제11조~제20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2조~제21조</u> (현행 제11조~제20조와 같음)</p>